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 제1조(목적)
-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 제1조의6(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 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 제3조(토양오염실태조사)
- 제4조(토양정밀조사 지역)
- 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 제5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 제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 제5조의4(토양정화계획의 수립)
- 제6조(손실보상청구서)
- 제7조(재결신청서)
- 제7조의2
-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 제8조의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 제9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 제10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 제10조의3(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 제11조(검사신청 절차 등)
- 제12조(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 제13조(누출검사 등)
- 제14조(검사항목)
- 제15조(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 제15조의2(누출검사 대상시설)
- 제16조(검사결과의 통보 등)
- 제17조(시료채취방법 등)
- 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 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 제18조(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 제19조(반출정화대상)
- 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 제19조의3(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 제19조의4(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 제19조의5(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 제19조의6(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 제19조의7(검증의 절차·방법 등)
- 제20조(토양오염대책기준)
- 제21조(대책지역 지정신청서)
-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고시사항)
- 제23조(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 제24조(대책계획의 수립등)
- 제25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감독기관)
- 제26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 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 제28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 제29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 제30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 제31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 제31조의2(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 제31조의3(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 제31조의4(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 제31조의5(지위승계의 신고)
- 제32조(기술인력의 교육)
- 제32조의2(교육계획 등)
- 제33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34조(출입 검사 등)
- 제35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37조(규제의 재검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77, 717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6. 30.>

[본조신설 2001. 12. 31.]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 6. 30.>

[본조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용도, 오염물질의 종류·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0. 6., 2021. 9. 16.>

[전문개정 2005. 6. 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05. 6. 30.>]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1조의4에서 이동 <2005. 6. 30.>]

제1조의6(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이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일정, 범위, 기준 등이 포함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②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는 자료조사, 현장조사 또는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상호, 소재지
2. 대상시설의 설치연도, 면적, 시설용량, 취급물질 등 현황
3. 대상시설의 최근 5년간 토양오염검사,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⑤ 한국환경공단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11. 27.>

[본조신설 2016. 4. 28.]

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전국토를 일정단위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전·답, 임야, 공원 등 토지의 용도를 고려하여 측정지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5.>

[전문개정 2001. 12. 31.]

제3조(토양오염실태조사)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역, 사격장 및 폐반침묵 사용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9. 6. 25., 2011. 10. 6., 2015. 3. 24., 2018. 11. 27.>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③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1. 12. 31.]

제4조(토양정밀조사 지역) 법 제5조제4항제3호마목에 따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31.>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과 그 주변지역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과 그 주변지역
3.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주변지역
 -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의 석유정제업자의 석유 정제시설 및 저장시설
 -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의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 저장시설
 -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의 석유판매업자의 석유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
 - 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4호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5호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
4.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는 지역
5. 자연재해 등으로 토양환경이 변화되어 토양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토양환경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지역

[본조신설 2011. 10. 6.]

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 12. 31.>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지점의 위치 및 면적
-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는 날 3월전에 하여야 한다.

제5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자료조사 및 침식량 산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치, 표고, 지형(경사도, 경사장)
2. 토지 이용 현황
3. 토성(土性), 용적밀도, 유기물함량, 토양 구조, 투수등급
4. 강우특성
5. 식생 및 작물재배 현황
6. 표토유실방지 및 복원대책 등 관리현황
7. 토양 침식량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10. 6.]

제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토양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1. 10. 6.]

제5조의4(토양정화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확인된 토양오염의 정도를 반영하여 토양정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3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개선 및 오염확산 방지 등 응급조치 계획
2. 정화 후 부지 활용계획

[본조신설 2011. 10. 6.]

제6조(손실보상청구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 6. 30.>

제7조(재결신청서)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의2 삭제 <2015. 3. 24.>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12. 31., 2005. 6. 30.>

[제목개정 2001. 12. 31., 2005. 6. 30.]

제8조의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7., 2016. 4. 28.>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 6. 30.]

제9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12. 31., 2005. 6. 30.>

[제목개정 2001. 12. 31., 2005. 6. 30.]

제10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1. 27.]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①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 <개정 2015. 3. 24.>

②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의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05. 12. 30., 2008. 7. 30., 2011. 10. 6., 2014. 12. 24., 2018. 11. 27.>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및 구조설비명세표 사본 1부
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유관시설의 위치도(관경, 긴급차단밸브 위치 기재) 사본 1부

[본조신설 2001. 12. 31.]

제10조의3(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3. 5. 31.]

제11조(검사신청 절차 등) ①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토양오염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10. 6., 2015. 3. 24.>

②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검사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또는 누출검사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채취일부터 14일 이내에 이·화학적 분석

[전문개정 2001. 12. 31.]

제12조(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7. 30., 2009. 6. 25., 2014. 12. 24.>

1.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3.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

②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누출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09. 6. 25.>

[전문개정 2001. 12. 31.]

[제목개정 2008. 7. 30.]

제13조(누출검사 등) ①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3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 6. 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1. 12. 31.]

제14조(검사항목) 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 6. 30., 2006. 3. 7.>

[전문개정 2001. 12. 31.]

제15조(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전문개정 2005. 6. 30.]

제15조의2(누출검사 대상시설) ①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누출검사대상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1. 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시설이 누출검사대상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7.>

[본조신설 2011. 10. 6.]

제16조(검사결과와 통보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10. 6., 2018. 11. 27.>

[전문개정 2001. 12. 31.]

제17조(시료채취방법 등)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별표 6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 6. 30.>

[전문개정 2001. 12. 31.]

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법 제13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1. 27.>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환경연구원

[본조신설 2005. 6. 30.]

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을 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화책임자, 조치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화책임자가 조치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도 이행완료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본조신설 2005. 6. 30.]

제18조(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0., 2011. 10. 6., 2013. 5. 31.>

1. 정밀조사명령의 경우
 - 가. 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범위 조사명세서
 - 나.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결과.

2. 시설의 설치·개선·이전 또는 정화조치 명령의 경우

가. 시설개선·오염토양정화 등 개선명세서 또는 토양정화검증보고서. 이 경우 토양정화검증보고서에는 정화 방법의 적정성 검토 내용, 정화방법별 정화과정, 토양오염도 변화추이, 환경관리 사항, 토양정화일지, 오염토양의 반출 내역, 정화토양의 재사용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만, 부지 밖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후 이전된 토양처리내용 증명자료[이전장소, 이전물량 및 처리내용(처리자, 영수증, 사진 등)]를 제출한다.

다. 토양정화검증서(토양정화검증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전문개정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제19조(반출정화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5., 2013. 5. 31., 2015. 3. 24., 2018. 11.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토양오염물질 운송차량의 전복 등 긴급한 사고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3. 오염토양의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현장에서 정화하는 때에는 정화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4. 영 제5조의8제2항, 제8조의3제2항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정화과정 검증결과 반출하여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다만,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본문에 따른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5. 토양오염이 발생한 부지가 같은 시·군·구 내에 흩어져 있는 경우로서 오염부지의 소유자 또는 정화책임자가 갖고 각각의 오염부지에 토양정화시설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하여 토양정화업자가 오염부지 중 어느 한 곳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정화하는 경우(정화 대상 오염토양 전부를 하나의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오염토양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전문개정 2005. 6. 30.]

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①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0., 2011. 10. 6., 2013. 5. 31., 2015. 11. 30., 2018. 11. 27.>

1.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3.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반출정화의 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2011. 10. 6., 2018. 11. 27.>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정하다고 통보한 때에는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6., 2013. 5. 31., 2018. 11. 27.>

④ 법 제15조의3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신설 2008. 7. 30., 2011. 10. 6., 2013. 5. 31.>

1. 반출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반출 오염토양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3.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⑤ 법 제15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 5. 31., 2018. 11. 27.>

⑥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는 별표 6의2와 같다.<개정 2018. 11. 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오염토양의 반출 또는 정화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3. 5. 31., 2018. 11. 27.>

[본조신설 2005. 6. 30.]

제19조의3(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 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27.>

1. 유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2. 중금속류: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 2의2. 불소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②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부지의 소유권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7.>

1. 오염부지의 현황 및 오염이력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현황 및 장래의 토지이용 계획
3. 시설물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토양정밀조사 결과

5. 그 밖에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 11. 27.>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8. 11. 27.>

⑤ 위해성평가를 하려는 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3. 24., 2018. 11. 27.>

1.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중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오염물질
2. 현장조사 방법
3. 오염물질의 노출경로
4. 독성평가 자료

⑥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5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계획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고 위해성평가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5. 3. 24., 2018. 11. 27.>

1. 오염범위 및 노출농도
 2. 노출평가 및 독성평가 결과
 3. 위해의 정도 및 정화시기, 정화범위, 정화수준
 - ⑦ 정화책임자는 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3. 24., 2018. 11. 27.>
 - ⑧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주민이 위해성평가서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8. 11. 27.>
 1. 위해성평가서의 요약본
 2. 위해성평가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3.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 ⑨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주민은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 11. 27.>
- [본조신설 2011. 10. 6.]
-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6으로 이동 <2011. 10. 6.>]

제19조의4(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1. 27.>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1. 위해성평가 실시 오염물질의 적정여부
 2. 위해성평가 과정
 3. 위해의 정도 및 정화시기, 정화범위, 정화수준의 적정여부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8. 11. 27.>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의 검증 및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의견 제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1. 27.>
 1.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의 토양환경 담당자
 2. 위해성평가 관련 전문가
 3.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위해성평가 대상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
 -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위해성평가서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15. 3. 24.>
- [본조신설 2011. 10. 6.]
-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7로 이동 <2011. 10. 6.>]

제19조의5(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에 반영하려는 경우 위해성평가의 최초검증 후 매년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위해성평가에 따른 정화시기를 재검증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1. 27.>

② 그 밖에 위해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10. 6.]

제19조의6(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또는 정화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25., 2011. 10. 6., 2013. 5. 31., 2015. 11. 30., 2018. 11. 27.>

1. 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서
2. 정화시설 설치·운영계획서
3.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4.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② 법 제15조의6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 10. 6., 2015. 3. 24.>

1.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토양오염물질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3.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4. 정화시설 설치·운영계획의 변경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6., 2013. 5. 31., 2018. 11. 27.>

[전문개정 2008. 7. 30.]

[제19조의3에서 이동 <2011. 10. 6.>]

제19조의7(검증의 절차·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은 정화착공에서 정화완료까지 토양정화의 단계별로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정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5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6의3와 같다.<개정 2008. 7. 30., 2013. 5. 31.>

[본조신설 2005. 6. 30.]

[제19조의4에서 이동 <2011. 10. 6.>]

제20조(토양오염대책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1. 12. 31.>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삭제 <2001. 12. 31.>]

제21조(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12. 31.>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01. 12. 31.>]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고시사항)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
2.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 <2001. 12. 31.>]

제23조(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1. 12. 31., 2005. 6. 30.>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 <2001. 12. 31.>]

제24조(대책계획의 수립등)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27.>

1.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단위사업별 주체 및 사업기간
3. 총소요비용 및 조달방안
4.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기대효과
5.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2001. 12. 31.>]

제25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감독기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05. 6. 30., 2015. 3. 24.>

[본조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종전 제25조는 제24조로 이동 <2001. 12. 31.>]

제26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정화책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개시일 15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6., 2015. 3. 24., 2018. 11. 27.>

②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선사업의 방법 및 종류
2. 사업기간 및 사업지역
3.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분야별 소요사업비(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6., 2018. 11. 27.>

[전문개정 2008. 7. 30.]

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경지에 퇴비 및 유기농법의 수단으로 분뇨등을 사용하는 행위
2. 기타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의 지정목적에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28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7. 4., 2011. 10. 6., 2013. 5. 31.>

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2.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06. 7. 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4., 2008.

7. 30., 2009. 6. 25., 2011. 10. 6.>

③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06. 7. 4., 2011. 10. 6., 2013. 5. 31.>

[본조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중전 제28조는 제33조로 이동 <2001. 12. 31.>]

제29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10. 6., 2013. 5. 31.>

[본조신설 2001. 12. 31.]

제30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7., 2011. 10. 6., 2013. 5. 31.>

1.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
2. 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
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

[본조신설 2001. 12. 31.]

제31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 3. 24.>

②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개정 2015. 3. 24.>

[본조신설 2001. 12. 31.]

제31조의2(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 및 영 제17조의4제1항·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반입정화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토양정화업등록증(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내줘야 한다.

③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 및 영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2항에 따른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 14.]

제31조의3(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토양정화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5. 31.>

[본조신설 2005. 6. 30.]

제31조의4(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5. 6. 30.]

제31조의5(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0., 2011. 10. 6., 2013. 5. 31.>

[본조신설 2005. 6. 30.]

제32조(기술인력의 교육) ①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7., 2008. 7. 30., 2009. 6. 30., 2013. 5. 31., 2016. 12. 30.>

1. 신규교육 :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8시간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한다.<신설 2009. 6. 30.>

[본조신설 2005. 6. 30.]

[종전 제32조는 제36조로 이동 <2005. 6. 30.>]

제32조의2(교육계획 등) 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7.>

②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7.>

③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6. 30.>

[본조신설 2005. 6. 30.]

제33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5조제4호에서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6. 25., 2015. 3. 24.>

1.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2.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정화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대책
3. 군사지역안에서의 토양오염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4. 토양환경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5. 토양오염 사고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6.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9. 6. 25.]

[제28조에서 이동 <2001. 12. 31.>]

제34조(출입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받거나 출입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에 기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 14.]

제35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의 보고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 6. 30.>

[본조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5. 6. 30.>

② 삭제 <2009. 6. 25.>

[본조신설 2001. 12. 31.]

[제32조에서 이동 <2005. 6. 30.>]

제3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23. 4. 17.>

1. 제8조의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2. 제19조에 따른 반출정화대상: 2014년 1월 1일

2의2. 삭제 <2017. 11. 30.>

3. 삭제 <2023. 4. 17.>

4. 제31조의4 및 별표 11의2에 따른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23. 4. 17.>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교육의 종류·주기·시간: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 4. 30.]

부칙 <제16호, 1996. 1. 4.>

이 규칙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 1999. 2.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21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토양관련전문기관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및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9에 규정된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9 제1호 나목 4번 항목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ECD)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 Mass Spectrometer)는 2003년 1월 1일까지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토양관련전문기관중 토양오염조사기관(부칙 제3조에 규정된 기관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9 제1호 나목 4번 항목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ECD)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 Mass Spectrometer)는 2003년 1월 1일까지 구비하여야 한다.

부칙 <제128호, 2002. 8. 17.>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⑪ 내지 ⑫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6호, 2005. 6.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송유관시설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19조,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 제32조 및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 나목(나)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⑪ 내지 ⑫ 생략

부칙 <제190호, 2005. 12. 3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로 하고, 동호 가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200호, 2006. 3. 7.>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검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5호, 2006. 7. 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 2007. 10. 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3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고, 별표 10 제1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⑭ 부터 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6호, 2007. 11.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검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 2008. 7.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2호나목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양오염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3호, 2009. 6.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제19조의2제5항, 제31조의2제1항제2호, 별표 3, 별표 7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반출정화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오염토양 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양오염우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토양오염도 측정 및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검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양오염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도검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토양오염도검사주기에 관한 특례) ①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후 3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5년이 되는 해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8년 또는 9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이 되는 해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후 6년 또는 7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10년이 되는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11년 또는 12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15년이 되는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13년 또는 14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16년이 되는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오염토양 정화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공사의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에 따른다.

제7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5호, 2009. 6. 3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411호, 2011.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도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4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7호, 2011. 10.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도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4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3호, 2012. 7. 4.>(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9호, 2013.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명령 등에 대한 이행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조치명령을 받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 2014. 12. 2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사
본 1부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 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 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 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	---

⑭부터⑳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97호, 2015.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관련전문기관 의견서 첨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설치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양오염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양오염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2호, 2015.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호, 2015. 12. 22.>(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8호, 2016. 4.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3호·제5호, 별표 3 비고 제6호 및 별표 7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4호, 2016. 12. 30.>(일물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721호, 2017. 11.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776호, 2018. 11. 27.>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별표 2 제2호, 별표 3의 1, 2-디클로로에탄란, 별표 5 제2호, 별표 7의 1, 2-디클로로에탄란, 별표 11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호, 2020. 7. 14.>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 2021. 9. 1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호, 2022. 1. 21.>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3호, 별표 3 비고 제2호 및 별표 7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2호, 2023. 4. 1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토양오염물질(제1조의2관련)

[별표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3관련)

[별표 3]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별표 3의2]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제10조의3 관련)

[별표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제14조 관련)

[별표 6] 시료채취방법 등(제17조 관련)

[별표 6의2]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제19조의2제7항 관련)

[별표 6의3]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제19조의7제2항 관련)

- [별표 7] 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 관련)
- [별표 8] 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표지판[제23조관련]
- [별표 9] 삭제
- [별표 10]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31조제1항관련)
- [별표 11] 토양오염검사수수료(제31조제2항 관련)
- [별표 11의2]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제31조의4관련)
- [별표 12]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 [별지 제3호서식] 재결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
- [별지 제7호서식]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결과 통보
- [별지 제9호서식] 이행보고서(조치명령, 중지명령 등)
- [별지 제9호의2서식]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 [별지 제9호의3서식] 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
- [별지 제9호의4서식]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
- [별지 제10호서식]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지정(변경)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지정서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 [별지 제15호서식] 토양정화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토양정화업등록증
- [별지 제17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
- [별지 제18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
- [별지 제19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

토양오염물질(제1조의2관련)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구리 및 그 화합물
3. 비소 및 그 화합물
4. 수은 및 그 화합물
5. 납 및 그 화합물
6. 6가크롬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8. 니켈 및 그 화합물
9. 불소화합물
10. 유기인화합물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2. 시안화합물
13. 페놀류
14. 벤젠
15. 톨루엔
16. 에틸벤젠
17. 크실렌
18. 석유계총탄화수소
19. 트리클로로에틸렌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1. 벤조(a)피렌
22. 1,2-디클로로에탄
23. 다이옥신(푸란을 포함한다)
24. 그 밖에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3관련)

종 류	대 상 범 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3. 송유관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용량산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동일한 부지안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2. 부지가 연결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동일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물 질	오염 기준 (단위: 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1지역	2지역	3지역
1. 카드뮴	4	10	60
2. 구리	150	500	2,000
3. 비소	25	50	200
4. 수은	4	10	20
5. 납	200	400	700
6. 6가크롬	5	15	40
7. 아연	300	600	2,000
8. 니켈	100	200	500
9. 불소	400	400	800
1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12. 시안	2	2	120
13. 페놀	4	4	20
14. 벤젠	1	1	3
15. 톨루엔	20	20	60
16. 에틸벤젠	50	50	340
17. 크실렌	15	15	45
18.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19.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21. 벤조(a)피렌	0.7	2	7
22. 1,2-디클로로에탄	5	7	70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160	340	1,000

※ 비고

-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5.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반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6.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관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지역에 해당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제10조의3 관련)

1. 설치기준

구 분	시 설 명	세 부 기 준
저장시설 부분	이중벽 탱크	- 강철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Reinforced Plastics), 강철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Ethlene), FRP + FRP 또는 강철 + 강철의 이중 구조
	탱크 전용실	- 두께 0.3m 이상의 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한 강도를 갖춘 구조
	넘침(Over Flow) 방지장치	- 유류 등 저장물질이 90% 이상 주입될 시 자동으로 주입구가 폐쇄되거나 공급이 차단되는 구조
	탱크 집유통 (集油桶, sump)	- 외부의 토압(土壓)에 변형되지 아니하는 구조 - 방수, 방유가 될 수 있는 기밀구조이고, 내식성이 있는 재질사용
	누유(漏油)감지 및 경보장치	- 누유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누유 시 램프 점등 및 경보가 울리는 구조
주유·이송 부 문	이중 배관	- 주 배관은 내관 및 외관의 이중 구조로 하여 누출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 - 연결부위가 없는 구조로 시공
	주유기 집유통	- 방수 및 방유가 될 수 있는 기밀구조이고 내식성이 있는 재질사용
기 타	유수분리시설	- 콘크리트와 같이 내유성이 있고 차량하중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고 4단 이상의 구조로 시공

2. 유지·관리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운영관리자	- 시설 운영관리자 1명 이상 지정·운영

지정		
정기 점검	탱크부/ 계측구	- 저장탱크의 급격한 재고 증감여부 및 주요원인 파악 - 탱크 내부 누유여부(누유감지센서 활용) 확인 - 주유소 지반 침하 및 바닥 균열여부 확인
	맨홀부	- 맨홀뚜껑 상태, 맨홀 상부 수분 및 유류 등 저장물질 존재여부 확인 - 탱크섬프, 배관 관통부 봉인(sealing) 상태 점검
	주유기	- 주유기 섬프 내, 주유기 하단 및 배관 누유상태 점검 - 주유기 본체와 호스, 호스와 노즐 연결 부위의 누유확인 및 균열, 마모 등을 점검(주유기와 주유배관 연결부 누유여부 확인) - 체크밸브(check valve)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배관이음쇠 (Quick coupling)	- 뚜껑의 설치 상태 확인(사용 후에는 뚜껑을 닫아 두는지 여부) - 배관이음쇠의 풀림이나 변형 등의 손상여부 확인
	주입박스	- 주입 종료 시 유출여부 확인 - 주입구 박스 봉인(sealing) 상태 및 파손여부 점검 - 주입절차 준수 확인
	유수분리조	- 유수분리조 내 기름띠 확인 - 유수분리조 내 유류 및 슬러지 등 이물질 침전상태 점검 및 청소 - 유수분리조 변형 및 파손상태 확인
	기름도랑 (trench)	- 기름도랑 내 각종 오염물질 및 이물질 점검 및 청소 - 기름도랑의 변형 및 파손 상태 확인

※ 비고: 정기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10년·15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각 1회
 - 나. 가목에 따른 검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1회
 - 다.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Dike) 내 설치된 저장시설(이하 “블록”이라 한다) 중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한다.
2.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날부터 매 8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검사방식에 관계없이 1회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매년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가목 또는 라목의 지역(나목 또는 다목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물질이 불검출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은 다음 연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 나.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과 관련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제14조 관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 항목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 시설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 (TPH)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불소·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시안·페놀·트리클로로에틸렌(TCE)·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1,2-디클로로에탄 및 벤조(a)피렌 중 해당 항목
3. 송유관 시설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 (TPH)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 비고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중 나프타, 휘발유 등 방향족탄화수소류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4개 항목을, 항공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원유 등 지방족탄화수소류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석유계총탄화수소 (TPH) 항목만을 검사하고,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을 각각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목만을 검사한다.
2. 그 밖의 유종(油種)으로서 구성성분을 고려하여 한 가지 검사항목만으로 오염도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만을 적용한다.

시료채취방법 등(제17조 관련)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에서의 시료채취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종류가 다른 토양오염물질(유류로서 종류가 다른 것은 동일물질로 본다)을 개별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별 시설별로 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 가. 개별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 이하인 저장시설이 1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지점에서 시료채취. 다만, 개별 저장시설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2개 지점을 추가하여 시료채취를 한다.
 - 나. 개별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 저장시설별로 3개 지점에서 시료채취
 - 다. 개별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 초과시설과 그 미만인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50만리터 초과시설은 개별 저장시설별로 각각 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나머지는 50만리터 미만 저장시설은 그 용량합계가 50만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누출우려가 높은 저장시설에서 2개 지점을 추가하여 시료 채취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주변지역에서의 시료채취는 주변지역 내에서 1개 지점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3. 철강슬래그가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된 지역의 경우 사용된 대상물이 아닌 그 주변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4. 그 밖에 시료채취 등 토양오염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제19조의2제7항 관련)

1. 법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자(이하 이 표에서 "반출자"라 한다)는 오염토양을 반입정화시설로 위탁하여 운반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운반자"라 한다)에게 오염토양을 인계하기 전에 오염토양 인계정보 및 운반자 인계인수 정보가 포함된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정화처리자(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 중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하여 오염토양을 인계받아 정화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운반자로부터 오염토양을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오염토양 인계정보를 확인한 후 오염토양 인수정보가 포함된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정화처리자는 정화를 완료한 토양을 사용자에게 인계하기 전에 정화토양 사용정보 및 정화토양 인수정보가 포함된 정화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수수의 산정기준 (제19조의7제2항 관련)

1. 산정기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비목별 세부산정방식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직접인건비

- 1)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기술자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 2) 오염토양의 양에 따라 1년간 투입되는 다음 표의 등급별 기술자 인원로 산정한다.

오염토양의 양(m ³)	등급별 기술자 투입인원(인·일/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000 미만	1	3	4	2
1,000 이상 ~ 3,000 미만	3	11	14	6
3,000 이상 ~ 5,000 미만	4.5	14	17	10
5,000 이상 ~ 10,000 미만	6	22	26	18
10,000 이상 ~ 20,000 미만	8	34	35	20
20,000 이상 ~ 50,000 미만	15	45	58	29
50,000 이상 ~ 100,000 미만	28	81	89	58

- 3) 등급별 기술자 투입인력 중 상위 기술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 기술자로 대체하여 투입할 수 있다.
- 4) 직접인건비는 1년의 정화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정화기간에 따라서 다음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가) 정화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요율 1.0 적용
 - 나) 정화기간이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요율 1.3 적용
 - 다) 정화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요율 1.6 적용
 - 라) 정화기간이 연장될 경우: 6개월 연장에 대하여 기준금액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 5) 오염토양의 양이 10만m³ 이상일 경우에는 오염토양의 양을 10만m³로

나누고, 각각의 오염토양의 양에 대하여 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직접경비

1) 검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장비, 시료채취·분석비 및 보고서 인쇄비 등으로 그 실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2)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비

가) 별표 11 제1호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에 따른다.

나) 시료채취지점 및 시료수 산정기준에 따라 지점수를 산정하고, 산정된 지점수에 지점별 시료수를 곱하여 완료검증 시료수량을 산정한다.

(1) 완료검증 시료채취 지점 및 시료수 산정기준

면 적(m ²)	지 점 수(점)	격자간격(m)
500 미만	5 이상	10 ~ 14 이내
500 이상 ~ 1,000 미만	6 이상	13 ~ 17 이내
1,000 이상 ~ 2,000 미만	7 이상	18 ~ 22 이내
2,000 이상 ~ 3,000 미만	9 이상	20 ~ 24 이내
3,000 이상 ~ 4,000 미만	11 이상	21 ~ 25 이내
4,000 이상 ~ 5,000 미만	13 이상	21 ~ 25 이내
5,000 이상 ~ 6,000 미만	15 이상	22 ~ 26 이내
6,000 이상 ~ 7,000 미만	17 이상	22 ~ 26 이내
7,000 이상 ~ 8,000 미만	19 이상	22 ~ 26 이내
8,000 이상 ~ 9,000 미만	20 이상	23 ~ 27 이내
9,000 이상 ~ 10,000 미만	21 이상	24 ~ 28 이내
10,000 이상 ~ 15,000 미만	25 이상	27 ~ 31 이내
15,000 이상 ~ 20,000 미만	30 이상	29 ~ 33 이내
20,000 이상 ~ 25,000 미만	35 이상	30 ~ 34 이내
25,000 이상 ~ 30,000 미만	40 이상	30 ~ 34 이내
30,000 이상 ~ 35,000 미만	45 이상	31 ~ 35 이내
35,000 이상 ~ 40,000 미만	50 이상	31 ~ 35 이내
40,000 이상 ~ 45,000 미만	52 이상	33 ~ 37 이내
45,000 이상 ~ 50,000 미만	55 이상	34 ~ 38 이내

비고

(가) 오염면적이 5만m²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을 5만m²로 나누고, 각각의 면적에 대하여 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시료는 채취지점의 깊이 1m 간격으로 1개씩 채취하며, 오염이 확산되지 아니하는 깊이까지 채취한다.

(다) 굴착(땅파기)처리하는 경우 굴착 전의 오염분포에 따라서 지점 및 시료수를 산정한다.

(라) 지하수 시료수는 오염지역의 지하수 현황에 따라서 별도 산정한다.

(2) 과정검증 시료채취 지점 및 시료수 산정기준

완료검증 시료수의 20% 이상을 과정검증의 시료수로 산정하고, 정화방법의 특성 및 기간을 고려·배분하여 검증한다.

다) 총 시료수량은 완료검증 시료수량에 과정검증 시료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한다.

3) 출장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4) 보고서 인쇄비: 보고서 인쇄 실비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5)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로 계산한다.

라. 기술료: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계산한다.

2. 검증수수료의 징수 및 환급

가. 검증기관은 토양정화공사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산출내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나. 검증기관은 신청인이 납부한 검증수수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착오로 이중 또는 초과 납부한 경우

2) 신청인이 검증신청을 취하한 경우

3) 그 밖에 검증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검증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경우

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 관련)

물 질	오 염 기 준 (단위: 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1지역	2지역	3지역
1. 카드뮴	12	30	180
2. 구리	450	1,500	6,000
3. 비소	75	150	600
4. 수은	12	30	60
5. 납	600	1,200	2,100
6. 6가크롬	15	45	120
7. 아연	900	1,800	5,000
8. 니켈	300	600	1,500
9. 불소	800	800	2,000
10. 유기인화합물	-	-	-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3	12	36
12. 시안	5	5	300
13. 페놀	10	10	50
14. 벤젠	3	3	9
15. 톨루엔	60	60	180
16. 에틸벤젠	150	150	1,020
17. 크실렌	45	45	135
18. 석유계총탄화수소(TPH)	2,000	2,400	6,000
19.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4	24	120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	12	75
21. 벤조(a)피렌	2	6	21
22. 1,2-디클로로에탄	15	20	210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500	1,000	3,000

※ 비고

1.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 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4. 벤조(a)피렌 항목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받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토양오염대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지정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표지판(제23조관련)

- | |
|-----------------------------|
| 1. 지정목적 |
| 2. 지정일자 : 년 월 일 |
| 3. 토양보전대책지역안에서 제한되는 행위 |
| 4. 토양보전대책지역 내역 |
| 가. 주 소 |
| 나. 면 적 |
| 다. 약 도 |

비 고

1.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3미터, 세로 2미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글자는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약도는 표지판 설치 위치에서 방향 및 지점 등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작성 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은 사방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삭제 <2005.6.30>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31조제1항관련)

1. 토양시료의 채취는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시 신고된 기술요원이 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도면상에 시료채취지점을 표기하고 시료채취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를 위한 시추장비 등의 운전은 기술요원이 아닌 다른 인력이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술요원은 시료채취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2. 누출검사는 반드시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시 신고된 기술인력이 실시하여야 하며, 누출검사자는 누출측정결과 보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3.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토양정밀조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토양정화의 검증 등 전년도 검사실적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실적은 당해 연도말까지의 검사결과 통보분을 의미한다.
4. 토양관련전문기관은 검사일지, 검사결과기록부, 시약소모대장, 검사신청접수 및 결과 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등을 영업소소재지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5. 토양시료의 분석은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시 신고된 기술요원이 하여야 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6.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도급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 전부를 다시 하도급해서는 아니 된다.

토양오염검사수수료(제31조제2항 관련)

1.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단위: 원)	비고
카드뮴 · 구리 · 납		44,200	항목당
비소		44,200	
수은		44,200	
6가크롬		44,200	
아연 · 니켈		44,200	항목당
불소		71,100	
유기인		35,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14,000	
시안		17,700	
페놀류		56,100	
유류	벤젠	40,600	4개의 검사항목 전부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검사항목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개별 검사항목당 26,900원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62,7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26,900	항목당
벤조(a)피렌		114,000	
다이옥신		2,568,500	

시료채취비	91,900/공	
-------	----------	--

※ 비고: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2. 누출검사수수료

검사항목			단위	검사수수료 (단위: 원)
탱크부	간접방식	10만리터 이하	탱크1기	441,000
		10만리터 초과 30만리터 이하	〃	646,000
		30만리터 초과 100만리터 이하	〃	1,498,000
		100만리터 초과 160만리터 이하	〃	1,690,000
		160만리터 초과 320만리터 이하	〃	1,921,000
		320만리터 초과 480만리터 이하	〃	2,161,000
		480만 리터 초과	〃	2,386,000
	직접방식	비파괴검사	m당	9,200
배관부	간접방식	기본수수료	라인당	110,000
		체적수수료	m ³ 당	22,500

비 고

- 배관부의 누출검사수수료는 배관 1라인(시점 및 종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본수수료와 체적수수료를 합한 것으로 한다.
- 같은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어 동시에 검사가 가능한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1개의 저장탱크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에 다음 각 목의 검사수수료를 합한 것으로 한다.
 - 1개를 초과하는 탱크부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의 25퍼센트
 - 1개를 초과하는 배관부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의 30퍼센트
-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제31조의4관련)

1.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2. 토양정화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토양정화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오염토양을 운반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탁받은 오염토양을 반입정화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반입정화시설 또는 정화현장 입구에는 오염토양 정화 또는 반입정화시설임을 표시하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표지판을 지상 10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에는 오염토양의 양, 정화공법, 정화기간 및 관리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정화현장에 오염토양의 정화공정도 및 정화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정화일지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정화검증을 위한 정화현장 방문, 시료의 채취 등 검증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처분의 기준 (제3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는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5)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관련한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 11조제3항, 법 제14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	법 제23조의6 제2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법 제15조의 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 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경우					
2) 법 제11조제4항,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 검사 면제 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토양오염 검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5) 법 제15조의6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1호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6)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1호				
가)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다)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갖추어야 할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마) 삭제 <2013.5.31>					
바) 삭제 <2013.5.31>					
7)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 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법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6 제1항제2호					
가) 법 제23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				
나) 법인의 임원이 법 제23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지 아니한 경우		지정취소				
9)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6 제1항제1호	지정취소				
10) 법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2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 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법 제2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3) 법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1항제3호	지정취소				
14) 법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7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15)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법 제23조의6 제2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한 경우 16) 법 제23조의2제2항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검사 또는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6호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지정취소
--	--------------------	--------------	--------------	--------------	------

나.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3조의10 제3항	경고	영업정지 1 개월	영업정지 3 개월	영업정지 6 개월
3) 법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1항제2호				
가) 법 제23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			
나) 법인의 임원이 법 제23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3)의2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10제1 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 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1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 개월	영업정지 6 개월	등록취소
5) 법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및 토양 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 개월	영업정지 6 개월	등록취소
6) 법 제15조의3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한	법 제23조의10 제2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 개월	영업정지 6 개월	등록취소

경우						
7) 법 제15조의3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법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수탁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누출·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법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0)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7호					
가)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다)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갖추어야 할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마) 삭제 <2013.5.31>						
바) 삭제 <2013.5.31>						
11) 법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8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2) 법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9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앞쪽)

1. 총괄

(조사기관: ○○시·도, 시·군·구)

조사지역	조사 지역 수	초과 지역 수	초과 항목 수	조사항목별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수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PCB	시안	페놀	유류					TCE	PCE	1,2-디클로로에탄	벤조(a)피렌	다이옥신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계																										
공장 및 공업지역																										
공장폐수유입지역																										
원광석·고철 아적지역																										
금속제련소 주변지역																										
폐기물적치·매립 ·소각지역																										
금속광산주변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사고발생·민원 유발지역																										
기타토지개발지역																										
공단주변주거지역																										
어린이놀이터지역																										

※ 조사지역수: 해당 연도에 실시한 전체 조사지역수

초과지역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수(1개 조사지역에서 2개 이상의 항목이 초과한 경우 초과지역수는 1개로 계산)

초과항목수: 조사항목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수를 합산

2. 조사지역별 오염도 현황

가. 조사지역 개황

(조사기관: ○○시·도, 시·군·구)

연번	조사지역종류	조사지역 위치(지번)	토지소유자	토지지목	면적(㎡)	조사일자	분석기간	좌표	비고
								X Y	
								X Y	
								X Y	
								X Y	
								X Y	
								X Y	

※ 조사지역 종류: 오염원지역별 종류명

조사지역 위치(지번): 토양조사 시료채취지역의 지번까지 기재

토지소유자: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지목: 「지적법」상 지목의 종류

면적(㎡): 「지적법」상 조사대상 필지의 면적

조사일자: 시료채취일자

분석기간: 분석기관에서 조사항목을 분석한 기간(00.00.00 ~ 00.00.00)

좌표: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지점(중심점)의 좌표

비고: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여부(기준 초과, 기준 이내)

-당초 선정지점을 변경조사한 경우(변경), 추가로 조사한 지점의 경우(추가)

나. 토양오염도 현황

[illegible]

※ 이상은 표계산 프로그램(EXCEL)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

이
개
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손실보상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청구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손실내용	발생일시			
	발생장소			
	손실요지			
	보상요구액			

「토양환경보전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1부 2.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 1부. 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	결재	→	승인	→	통보
청구인		환경부, 시·도, 시·군·구, 토양 관련전문기관		환경부, 시·도, 시·군·구, 토양 관련전문기관		환경부, 시·도, 시·군·구, 토양 관련전문기관		환경부, 시·도, 시 ·군·구, 토양관 련전문기관		

재 결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청구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손실내용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손실발생사실

「토양환경보전법」 제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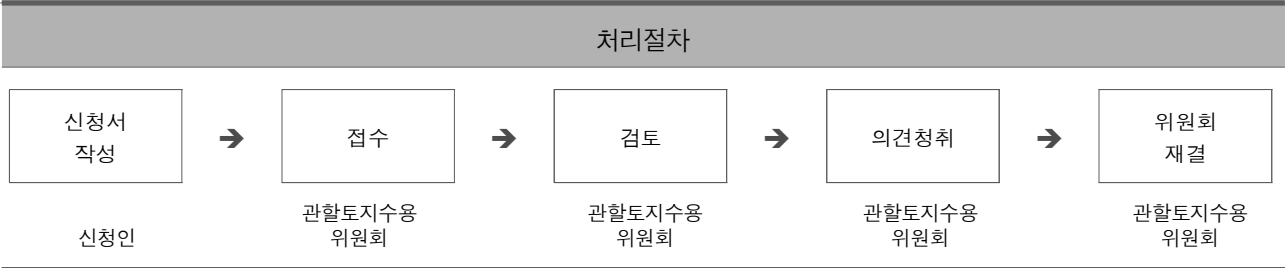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명세서 각 1부 2. 그동안의 협의내용 및 진행상황 1부	수수료 없음
------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		
	오염물질의 종류		
	관리대상시설의 규모 및 부지면적		
	그 밖의 관리대상시설의 주요 내용 및 특성(지하매설 저장시설의 경우 재질, 탱크 수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를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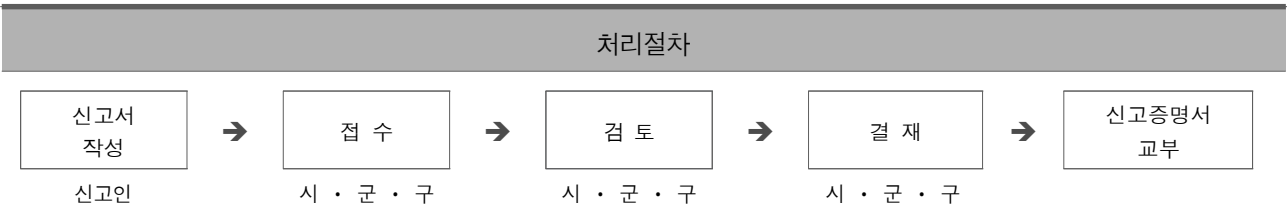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유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방지 시설			
그 밖의 사항			
신고증명서 분실사유	신고증명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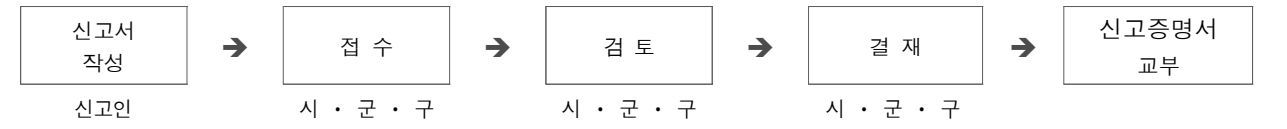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제 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

1. 상호(명칭):

2.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3.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내역

가.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

나.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저장용량:

다. 그 밖의 주요내용:

5.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내역

가. 방지시설의 종류:

나. 설치내용:

다. 그 밖의 주요내용:

6.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

[] 해당 [] 해당하지 않음 [] 확인을 신청하지 않음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뒤 쪽)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행정처분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검사기간제외)
------	------	------	-----------------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상호(명칭)		
	신고번호		설치연월일
	소재지		
	저장물질		
	시설구분 [] 지상 [] 지하		

시료채취희망일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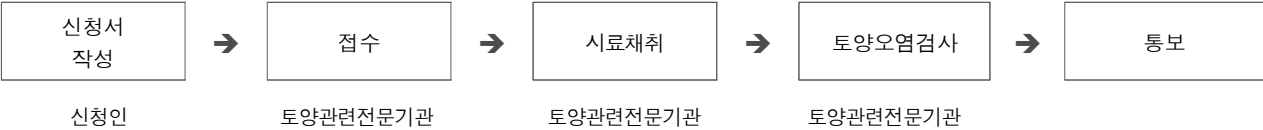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토양관련전문기관 대표 귀하

--

첨부서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도면 1부
------	--------------------

처리절차				
------	--	--	--	--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상호(명칭)		
	신고번호		설치연월일
	소재지		
	저장물질		
	시설구분 [] 지상 [] 지하		

최근검사일자

신청사유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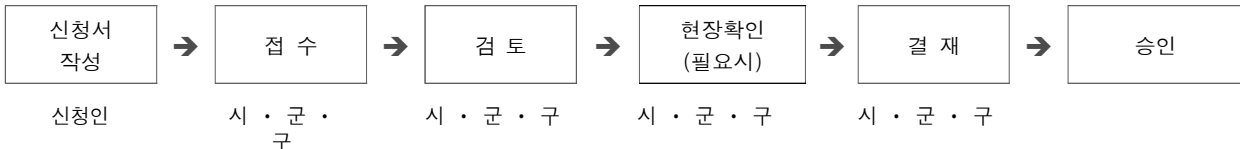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처리절차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결과 통보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
(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검사신청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검사기관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검사내용	검사일시	
	검사방법	
	검사결과	
	검사시설의 개요	
	기타 주요내용	

차기 정기검사일은 ()년 ()월 ()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도, 양수, 임대, 폐쇄, 또는 사용종료하거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부지나 그 주변지역의 토양을 교체하거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입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이행보고서(조치명령, 중지명령 등)

제출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이행내용	이행사항(시설개선 또는 오염토양정화 등)
	개선,정화 사업자(상호)
	오염토양정화 내역(오염토양의 이전장소, 이전물량 또는 처리내용 등)
	개선,이전 및 사용중지 내역(시설의 개선·이전·사용중지 내역 및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사용중지내역 등 이행사항)
	정화 후 토양활용 내역(장소, 양)
	그 밖의 참고사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행보고서(조치명령, 중지명령 등)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정밀조사명령의 경우

가. 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범위 조사명세서 1부

나.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결과 1부. 다만, 부지 밖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후 이전된 토양처리내용 증명자료[이전장소, 이전물량 및 처리내용(처리자, 영수증, 사진 등)] 1부

2. 시설의 설치·개선·이전 또는 정화조치 명령의 경우

가. 시설개선·오염토양정화 등 개선명세서 또는 토양정화검증보고서 1부

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서류 1부

다. 토양정화검증서(토양정화검증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제출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상호(명칭)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반출정화 사유	(관련법령 해당조항 및 그 밖의 사유)			
오염토양 현황	오염물질 및 농도			
	오염토양의 양(m²)			
	오염현장소재지			
	오염사유			
운반 계획	운반방법(자가 또는 위탁운반 여부/위탁운반의 경우 운전자 병기)			
	운반차량(번호)			
	운반장소(거리, km)			
	운반경로(소요시간, 운송시 통과하는 주요지점(도로) 등을 "→"로 연결하여 기재)			
정화 계획	정화방법			
	정화업자		(대표자 :	연락처 :)
	정화소요기간			
	정화검증기관(토양관련전문기관)		(대표자 :	연락처 :)
	정화토양 처리계획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
의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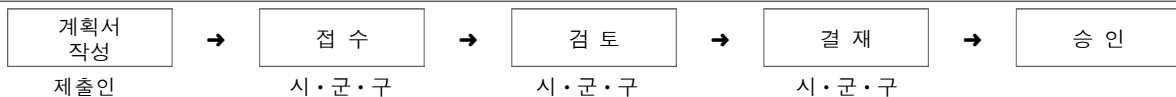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최초 계획의 경우 가.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1부 다.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2. 변경 계획의 경우: 변경 내용과 관련된 서류 1부	수수로 없음
------	--	-----------

처리절차



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칭)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오염현황	오염부지 소재지			
	오염원인 및 사유			
	오염물질 및 농도(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물질별 최고·최저 농도)			
	오염토양의 양(㎡) 및 오염부지 면적(㎡)			
위해성평가 신청사유	구체적인 신청 사유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물질 및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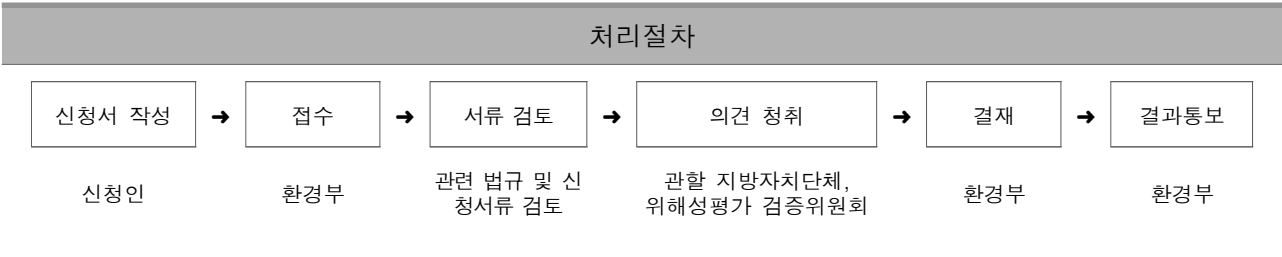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오염부지의 현황 및 오염이력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 현황 및 장래의 토지이용 계획 3. 시설물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토양정밀조사 결과 5. 그 밖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명칭				
지역				
지역현황	지번	소유주	용도지역	면적(m ²)
토양오염환경				
주위환경				
지정신청사유				
기타사항				

- 붙임: 1. 지역도면(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1부.
2. 당해 지역의 토양보전대책을 위한 관리계획서 1부.
3. 농경지인 경우에는 재배작물의 오염물질농도 분석결과서 1부.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상호(명칭)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계획	개선사업의 방법 및 종류		
	사업기간 및 사업지역(시설의 위치, 면적과 비용부담적용대상지역의 범위 포함)		
	시설용량·설치면적 등 개선사업의 규모		
	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재원조달방법		
	기타필요한 사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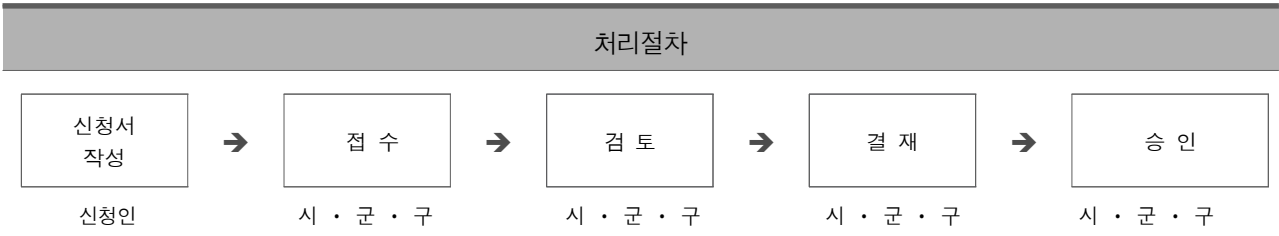
「토양환경보전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 **지정(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지정 10일 변경 5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지정서 분실사유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정의 경우 가.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1부 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변경지정의 경우 가.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나.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수수료 지정 10,000원 변경 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시·도		시·도		시·도		
신청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장 국립환경과학원		

제 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

1. 상호(명칭):
2.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3.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4. 실험실 소재지:
5. 기술인력 현황: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뒤 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행정처분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11.10.6>

토양정화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등록 : 10일 변경등록 : 7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1항·제3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등록의 경우 가.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반입정화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1부(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토양정화업등록증 1부(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등록의 경우 가.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토양정화업등록증 1부	수수료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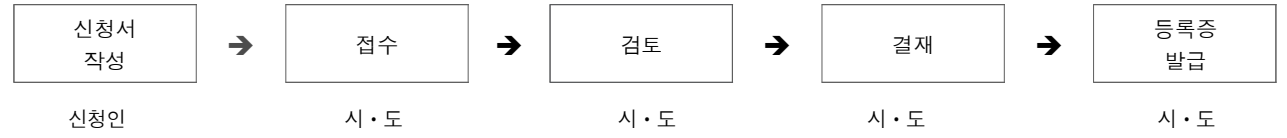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제 호

토양정화업등록증

1. 상호(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4.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5. 장비 및 기술인력 현황

가. 장비:

나. 기술인력: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행정처분사항>

일자	내용	확인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승계인	상호(명칭)		업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피승계인	상호(명칭)		업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사유				
승계일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5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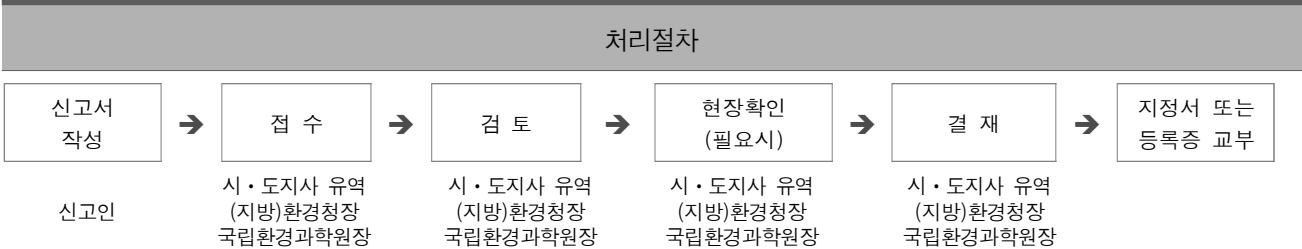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유역(지방)환경청장·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피승계인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증	수수료 없음
------	---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6, 제23조의10, 제26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 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토양환경보전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 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란을 보완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과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

관리대상 시설설치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명칭)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보고 및 검 사일시		
보고 및 검 사내용		
조치내용		
기타사항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관리대상시설의 개요 및 안내도 1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

(제1쪽)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현황

신고 업소 수	석유류				유독물
	소계	주유소	산업시설	기타(난방시설 등)	

※ 산업시설: 제조 및 생산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아파트, 백화점, 병원, 호텔의 난방시설 등 유류를 사용하는 시설

2. 토양오염도검사결과

가.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단위 : 업소수)

구분	검사대상				기준초과								TPH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mg/kg)		
	계	B T E X	T P H	BTEX + TPH	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BTEX	TPH	BTEX + TPH	5백 미만	5백 이상 8백 미만	8백이 상
계															
주유소															
산업시설															
기타															

※ TPH: 석유계총탄화수소
※ 검사대상 항목에서 BTEX에는 BTEX항목만 검사한 업소 수, TPH에는 TPH 항목만 검사한 업소 수, BTEX+TPH에는 BTEX와 TPH 항목을 모두 검사한 업소 수를 기입
※ 기준초과 항목에서 BTEX항목에는 벤젠(B), 톨루엔(T), 에틸벤젠(E), 크실렌(X) 중 2개이상 항목이 중복되어 초과되는 경우에 대하여 기입, BTEX+TPH항목에는 BTEX와 TPH 항목이 모두 초과한 업소수를 기입

나.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검사업소 수	기준 이내	기준 초과	기준 초과	비고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누출검사결과

구 분	검사대상 업소 수	검사결과(업소수)					비고 (부적합 검사방법)
		적합	부적합				
			계	탱크	배관	탱크+배관	
계							간접법:0 직접법:0
주유소							간접법:0 직접법:0
산업시설							간접법:0 직접법:0
기 타							간접법:0 직접법:0

※ 비고란에는 부적합 결과에 대한 누출검사 방법을 기재합니다(간접법, 직접법)

4.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 내역

업소명	소재지	검사결과		조치명령		이행일자		이행여부확인결과
		항목	오염도 (mg/kg)	명령일자	내용	이행일자	내용	
계								

※ 이상은 표계산 프로그램(EXCEL)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

(제1쪽)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현황

구분	신고 업소 수	석유류				유독물
		소계	주유소	산업시설	기타 (난방시설 등)	
계						
○○시·군·구						
○○시·군·구						

※ 산업시설: 제조 및 생활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아파트, 백화점, 병원, 호텔의 난방시설 등 유류를 사용하는 시설

2. 토양오염도검사결과

가.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단위 : 업소수)

구분		검사대상				기준초과								TPH토양오염도 검사결과(mg/kg)			
		계	BTEX	TPH	BTEX + TPH	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BTEX	TPH	BTEX + TPH	계	5백 미만	5백 이상 8백 미만	8백 이상
계	주유소																
	산업시설																
	기타																
○○시·군·구	주유소																
	산업시설																
	기타																

※ TPH: 석유계총탄화수소

※ 검사대상 항목에서 BTEX에는 BTEX항목만 검사한 업소 수, TPH에는 TPH 항목만 검사한 업소 수, BTEX+TPH에는 BTEX와 TPH 항목을 모두 검사한 업소 수를 기입

※ 기준초과 항목에서 BTEX항목에는 벤젠(B), 톨루엔(T), 에틸벤젠(E), 크실렌(X) 중 2개이상 항목이 중복되어 초과되는 경우에 대하여 기입, BTEX+TPH항목에는 BTEX와 TPH 항목이 모두 초과한 업소수를 기입

나.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구 분	검사업소수	기준 이내	기준 초과	비고
계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누출검사결과

구 분		검사대상 업 소수	검사결과(업소수)					비고 (부적합 검사방법)
			적합	부적합				
				계	탱크	배관	탱크+배관	
계	주유소							간접법:0 직접법:0
	산업시설							간접법:0 직접법:0
	기 타							간접법:0 직접법:0
○○ 시·군·구	주유소							간접법:0 직접법:0
	산업시설							간접법:0 직접법:0
	기 타							간접법:0 직접법:0

※ 비고란에는 부적합 결과에 대한 누출검사 방법을 기재합니다(간접법, 직접법)

4.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 내역

업소명	소재지	검사결과		조치명령		이행일자		이행여부확인결과
		항목	오염도 (mg/kg)	명령일자	내용	이행일자	내용	
계								

※ 이상은 표계산 프로그램(EXCEL)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